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목적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15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3호)	6
3.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6호) ..	9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71호)	13
5.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71호)	16
6. 자영업 영위 장애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38호) ..	19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39호) ..	22

8.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40호)	25
9.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41호) ...	28
10.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61호)	32
1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71호)	3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29.

다. 회 부 일 :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단체 운영과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

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¹⁾.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특례 유형 또는 존속기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운용의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 따른 특례를 포함하여 2026년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하였으며³⁾, 개

2)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

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존속기한보다 존치평가 결과에 따른 존속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2026년도 존치평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특례 중 6건은 존치, 4건은 조건부 존치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존속기한을 각각 5년(2031.12.31.까지)과 3년(2029.12.31.까지) 연장하려는 정부의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중 개정안 관련 특례 평가결과]

연번	소관 부처	근거 법률	결과
1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제24조	조건부 존치
2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존치
3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존치
4	성평등가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건부 존치
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조건부 존치
6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존치
7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조건부 존치
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존치
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존치
10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존치

자료: 재정경제부

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3호)

현 행	개 정 안
○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3호는 「결핵예방법」 제24조에 따라 대한결핵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⁴⁾, 본부와 결핵연구원, 글로벌협력원, 12개 지부와 9개 복심자의원을 두고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대한결핵협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한결핵협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4)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행 「결핵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대한 결핵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⁵⁾,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다만 대한결핵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차료 등의 보조로 소요되는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결핵예방법」 제24조는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대한결핵협회로 하고, 특례 요건을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⁶⁾.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조건부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개정안과 같이 2029년 12월 31

5) 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결핵예방법」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6. 12. 31.</u>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9. 12. 31.</u>

3.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6호)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6호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국가유공자등단체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말함⁷⁾.

7)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물품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단체에 대한 금전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⁸⁾. 이에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임차료 부담 경감 등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는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각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⁹⁾.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9)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71호)

현 행	개 정 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71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란 민주화운동¹⁰⁾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관 및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 민주화운동 기념·교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¹⁾.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차료 등 보조금 지출을 방지하고 정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¹²⁾.

11)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2)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1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6. 12. 31.</u>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1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9. 12. 31.</u>

5.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71호)

현 행	개 정 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34호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제13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¹³⁾,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13) 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다만 관련 법인·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임차료 등의 보조로 소요되는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위안부피해자법」 제13조는 국유재산 특례의 요건을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¹⁴⁾, 동법 시행령은 특례 대상을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¹⁵⁾,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¹⁶⁾.

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5)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6)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조건부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개정안과 같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위안부피해자법」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6. 12. 31.</u>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u>2029. 12. 31.</u>

6. 자영업 영위 장애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38호)

현 행	개 정 안
○ 자영업 영위 장애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자영업 영위 장애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38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주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보증금·임대료 등 초기 투자비용과 고정비 부담이 자영업 진입장벽 및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료 감면 특례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의 자영업 영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장애인고용법」 제17조는 국유재산 특례의 요건을 장애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영업장소 임대 우선순위를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¹⁷⁾,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¹⁸⁾.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조건부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개정안과 같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17)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8)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고용법」

-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月割)이나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임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39호)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39호는 「장애인고용법」 제56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¹⁹⁾, 본부와 고용개발원, 6개 직업

19) 「장애인고용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능력개발원, 6개 지역본부, 17개 지사, 보조공학센터로 구성됨.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공단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공단의 수입은 정부 출연금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 정부 재원 위주로 구성됨²⁰⁾. 따라서 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차료 등 출연금 지출을 방지하고 정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장애인고용법」 제56조는 국유재산 특례의 대상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고, 특례의 요건을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20) 「장애인고용법」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²¹⁾.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장애인고용법」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1)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8.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40호)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40호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장애인기업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²²⁾, 본부와 14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공단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22) 「장애인기업법」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장애인기업법」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외에 별도의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협회의 임차료 부담 경감 등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장애인기업법」 제15조는 국유재산 특례의 대상을 한국장애경제인협회로 하고, 특례의 요건을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²³⁾.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조건부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개정안과 같이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23)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기업법」

제15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41호)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41호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자립생활지원 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²⁴⁾.

2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 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²⁵⁾.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와 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²⁶⁾, 국가 외의 자가에 부합하는 시설을 직접 구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25) **제79조(비용 부담)** ①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국유재산 특례 요건을 동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²⁷⁾.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27)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61호)

현 행	개 정 안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61호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제28조에 따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²⁸⁾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각각 6·25전쟁과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서²⁹⁾,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등으로

28) 「참전유공자법」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해서도 동법 제28조를 준용함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29) 「참전유공자법」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되어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참전유공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³⁰⁾,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30)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다만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임차료 등의 보조로 소요되는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참전유공자법」 제28조는 국유재산특례요건을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³¹⁾.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1)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전유공자법」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6·25참전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71호)

현 행	개 정 안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6.12.31.</u>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u>2029.12.31.</u>

현 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71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이 곧 만료됨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수임무유공자³²⁾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32)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서³³⁾,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특수임무유공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³⁴⁾,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다만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임차료 등의 보조로 소요되는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는 국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3)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산특례 요건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³⁵⁾.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동 특례는 존치 결정되어 해당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예정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⁶⁾

35)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설정 시 사용료 감면은 5년, 양여와 장기사용허가는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3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 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 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문 의 처
02)6788-5160